

업무지침 포스코와이드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시행일: 2009.10.1	Page: 1/7
			Rev. : 15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포스코와이드(이하 "당사"라 한다)의 협력사 등록 및 평가에 대한 운영절차를 정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협력사란 계약을 위한 협상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된 회사(이하“협력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소싱그룹이란 회사의 본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 공사, 보수, 자재 등의 분야에 공급시장, 물품특성 및 계약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구매단위를 말한다.

③평가분석이란 작업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기준으로 협력사를 우수, 양호, 미흡 등으로 평가함을 말한다.

④총괄부서는 계약관리부서인 구매협력섹션으로 하며, 주관부서는 사업소 계약부서, 운영부서는 사업소 현장부서(시설팀 등)를 말한다.

⑤전자계약시스템이란 회사의 협력작업, 구매업무 등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싱그룹 관리, 가견적, 입찰, 계약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인터넷(<http://epro.poscowide.com>)을 통해 접속한다.

제3조(소싱그룹) ①모든 협력계약은 소싱그룹에 등록된 협력사를 최우선하여 검토한다.

②소싱그룹은 협력작업성격에 따라 용역, 공사, 유지보수, 자재로 구분하고 붙임 #1과 같이 대, 중, 소의 3단계 카테고리로 세분화 관리한다.

③협력사는 등록업종에 한하여 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가능하며, 단일업체가 2개이상의 카테고리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복수 등록이 가능하다.

제2장 등록대상업체 심사기준

제4조(신규등록 신청 및 취소) ①등록대상 협력사는 해당 작업의 전문업체를 원칙으로 하며, 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보유업체에 한한다.

②정기등록 및 갱신시기는 매년 5월이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수시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 전결로 총괄부서에 협력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업무지침 포스코와이드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시행일 : 2009.10.1	Page:2/7
			Rev. : 15

- ③거래를 희망하는 협력사는 회사가 지정한 서식과 절차에 의거,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총괄부서장은 협력사 등록신청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반려 시 사유를 기재하여 거절하거나, 해당업체에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⑤총괄(주관)부서는 협력사 모집 및 등록신청 시 회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등록 자격, 절차 등을 공지하여야 하며 등록기간은 15일 이상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총괄부서는 기준을 변경할 경우 갱신대상 업체에 대하여 30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총괄부서는 등록을 취소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즉시 통지하고, 해당 협력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제5조(심사방법)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병행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등 공급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방문 전에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방문일정을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심사대상) 등록을 신청한 협력사 또는 계약부서장이 신규업체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7조(심사주관) 총괄부서는 등록유무에 대한 결과를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메일 등으로 협력사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항목 및 배점) 세부 기준은 붙임 #4와 같으며,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절차)**
- ① 총괄부서는 전자계약시스템에 협력사 등록평가기준을 게시하여 등록희망 협력사에게 공지한다.
 - ②총괄부서는 제출된 심사평가와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합격 판정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협력사로 등록한다.
 - ③총괄부서장은 등록심사결과를 문서화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합격판정 기준) ①총괄부서는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합격판정하여 정식협력사로 등록한다.

②기준점수에 미달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주관(운영)부서의 필요에 따라 특별히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총괄부서장은 임시/일회성 협력사로 한시적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단, 주관(운영)부서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서면으로 증빙하는 경우에만 임시/일회성 협력사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임원의 승인 후 (총괄부서 확인 필수) 총괄부서에 요청한다.

- 가. 특수작업, 특허권 보유 등 특정업체만이 해당 작업이 가능할 경우
- 나. 공익목적 또는 도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지침 포스코와이드	시행일: 2009.10.1	Page:3/7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 다.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고용승계등이 필요한 경우
- 라.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등록사유가 객관적이며 서면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③ 임시/일회성 협력사의 유예기간은 등록기준일로부터 임시는 최대 6개월, 일회성은 계약 1건으로 제한한다. 또한 동일 건으로 반복적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라도 유예기간내에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식협력사로 승격이 어려울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제출서류) 등록대상 협력사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 협력사등록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보유면허 사본, 신용평가서 등 포함
- 거래대금 결제계좌 등록신청서(붙임 #5)

제12조(등록업체 관리) ①작업을 위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거나 세금 체납(유예처분은 제외), 신용등급이 D급 이하인 업체는 등록을 제한한다.

②총괄부서는 계약 시 과당경쟁 소지가 있거나 기타 계약여건상 등록업체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평가 실시 후 일부 업체를 삭제할 수 있다.

③등록업체가 2년간 건적제출, 입찰참여, 계약실적이 없는 업체는 소싱그룹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④과거 협력사 등록 실적이 있으나, 삭제 후 다시 등록을 원할 경우, 신규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평가를 진행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협력사 정기갱신시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Risk등급이 6~7등급인 경우 갱신을 제한한다.('25.1.1부 시행)

제13조(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 제재기준) [아래 표]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 행위를 한 협력사는 발생 즉시 해당 계약 건을 해지하고 등록에서 삭제한다. 또한, 제재기간 동안 입찰대상 업체로서의 자격을 취소하며, 동 업체가 새로운 입찰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신규 업체와 동일조건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 제재기준>

구분	심사항목	제재기간
계약 불이행	○ 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낙찰 후 고의성은 없으나, 사양확인 등의 과실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자(단순 오투찰은 제외)	1년 이내
	○ 계약자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정상적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년 이내
	○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납품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지체건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 계약체결 후 소재수급 곤란 등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내

	<p>○ 계약의 이행 또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포스코와이드 사업장 내에서 재해를 발생 시킨 자</p> <p>- 아래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p> <p>(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p> <p>(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p> <p>(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p>	<p>1년 이내</p>
	<p>- 일반(치료기간 4일 이상)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p>	<p>6개월 이내</p>
	<p>- 경미(치료기간 4일 미만)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p>	<p>3개월 이내</p>
	<p>○ 기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p>	<p>1년 이내</p>
부정당 행위	<p>○ 고의적으로 품질이 낮은 자재를 납품하거나 수량을 속여 납품 하거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p>	<p>3년 이내</p>
	<p>○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반출한 경우</p>	<p>5년 이내</p>
	<p>○ 악의성 투서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p>	<p>5년 이내</p>
	<p>○ 부당하도급을 한 경우(물품구매는 제재대상 제외)</p> <p>- 1차 위반</p> <p>- 2차 위반</p>	<p>1년 이내</p> <p>2년 이내</p>
	<p>○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p> <p>-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경우</p> <p>- 입찰 담합에 단순 가담한 경우</p>	<p>5년 이내</p>
	<p>○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타사의 계약에 상호를 빌려 준 경우</p>	<p>1년 이내</p>
	<p>○ 매수인의 입찰, 협상, 검수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계약이행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p>	<p>1년 이내</p>
	<p>○ 부정당공급사로 부터 물품을 구매, 납품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후 시정권고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p>	<p>1년 이내</p>
	<p>○ 비윤리행위시</p> <p>- 1백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p> <p>- 1백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p> <p>-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타의로 금전, 금품을 제공한 경우</p> <p>- 자기의사로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제공한 경우</p> <p>-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제공한 경우</p>	<p>5년 이내</p> <p>3년 이내</p> <p>3년 이내</p> <p>3년 이내</p> <p>1년 이내</p>
	<p>○ 계약의 체결, 이행 등과 관련한 '공급사 행동규범' 위반으로 중대한사회적 비난을 초래한 경우</p>	<p>2년 이내</p>
	<p>○ 청탁을 통해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p>	<p>2년 이내</p>

업무지침 포스코와이드	시행일: 2009.10.1	Page:5/7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Rev. : 15

제3장 협력작업 평가 시행

제14조(평가대상) ①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용역, 정비, 공사, 물품의 공급을 수행하는 협력사 중 1회 거래규모가 1천만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0.1.1>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허공법에 의하여 협력용역.정비.공사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재료비, 단순비용보상, 해외로 발주되는 작업
3. 임대차, 자문, 컨설팅, 회계일반, 설계, 감리, 시운전, 제작검정, 비파괴 검사, 측량, 지질조사

③본조의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총괄부서장은 평가대상업체를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1.1>

제15조(평가지기) ①용역, 정비, 공사, 물품의 공급을 수행하는 협력사의 품질평가 시기는 각각 다음과 같다. 단, 1회 정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준공·납품완료 및 최종정산 시에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22>

용역/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완료 및 대금정산 시 ▪ 장기계약 및 분할정산일 경우에는 각 정산 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및 대금정산 시 ▪ 장기공사일 경우 기성청구 시
자재/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품완료 및 대금정산 시 ▪ 실적 정산일 경우에는 각 정산 시

②협력사의 종합평가는 연간 1회 실시한다. 단,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협력사는 계약완료 1개월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본조개정 2020.1.1]

제16조(평가주관) 협력사 품질평가는 운영부서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한다. 단, 필요 시 평가대상업체를 추가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1]

제17조(평가기준) ① 품질평가는 품질평가서 첨부양식(붙임 6)에 의거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단, 운영부서 및 총괄부서와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평가항목은 운영부서장의 승인 하에 일부 조정, 변경, 제외, 추가가 가능하다.

② 종합평가는 품질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본조개정 2020.1.1]

업무지침 포스코와이드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시행일 : 2009.10.1	Page:6/7
			Rev. : 15

제18조(평가절차) ① 운영부서는 각 항목별로 배정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점수별로 정해진 해당등급을 부여한다.

- S : 95 이상, A : 90 이상, B : 80 이상, C : 70 이상, D : 69이하

② 운영부서는 품질평가결과를 협력사에 통보하며, 작업(납품)완료 및 준공 보고 시 품질평가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 주관부서는 연간 1회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종합평가는 품질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점수별로 제1항에서 정해진 해당등급을 부여한다.

④ 주관부서는 종합평가결과를 협력사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며, 협력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5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협력사에 적용한다.

[본조개정 2020.1.1]

제19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등급은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평가등급별 Incentive와 Penalty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Incentive와 Penalty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2.1.1>

등급	인센티브 및 페널티
S 등급	대금 전액 현금결제,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수보증보험 각서로 대체
A 등급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수보증보험 각서로 대체
B 등급	-
C 등급	경고 및 개선계획서 제출 / 2년 연속 C 등급일 경우 거래제한 1년
D 등급	소싱그룹 퇴출(거래제한 1년)

② 거래를 제한한 경우 대상 업체가 없거나 경쟁유도 등 제반 여건상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참여시킬 수 있으며, 신규업체 발굴 시까지 그 조치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총괄(주관)부서는 평가결과를 타 제도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평가담당자의 의무) ① 협력사 평가담당자는 협력사의 해당 과업수행에 대한 평가를 진실되게 하여야 하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가 없는 B등급을 기준으로 가점/감점 등급 산정 시 평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1.>

부 칙

1. 이 지침은 2009년 10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2. 이 지침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협력작업 수행회사 제재기준은 본 지침의 시행년도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업무지침 포스코와이드	협력사 등록 및 평가지침	시행일: 2009.10.1	Page:7/7
			Rev. : 15

제재적용이 가능한 시점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폐지한다. 또한, 기존의 제재기준과 본 지침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록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특허공법에 의하여 협력용역.정비.공사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돌발사고 복구.도급사의 긴급한 요청 등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업체등록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4.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자체관리 한다.

가. 연간계약에 의한 작업으로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업체

나. SPOT 계약에 의한 작업으로 연간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업체

다. 연간 1회성 작업 및 물품공급 업체

5. 이 지침은 2010년 5월 1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6. 이 지침은 2010년 7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7. 이 지침은 2010년 11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8. 이 지침은 2010년 12월 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9.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0. 이 지침은 2018년 9월 7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1. 이 지침은 2019년 1월 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2.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3. 이 지침은 2020년 6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4. 이 지침은 2021년 3월 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5. 이 지침은 2021년 1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6.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7.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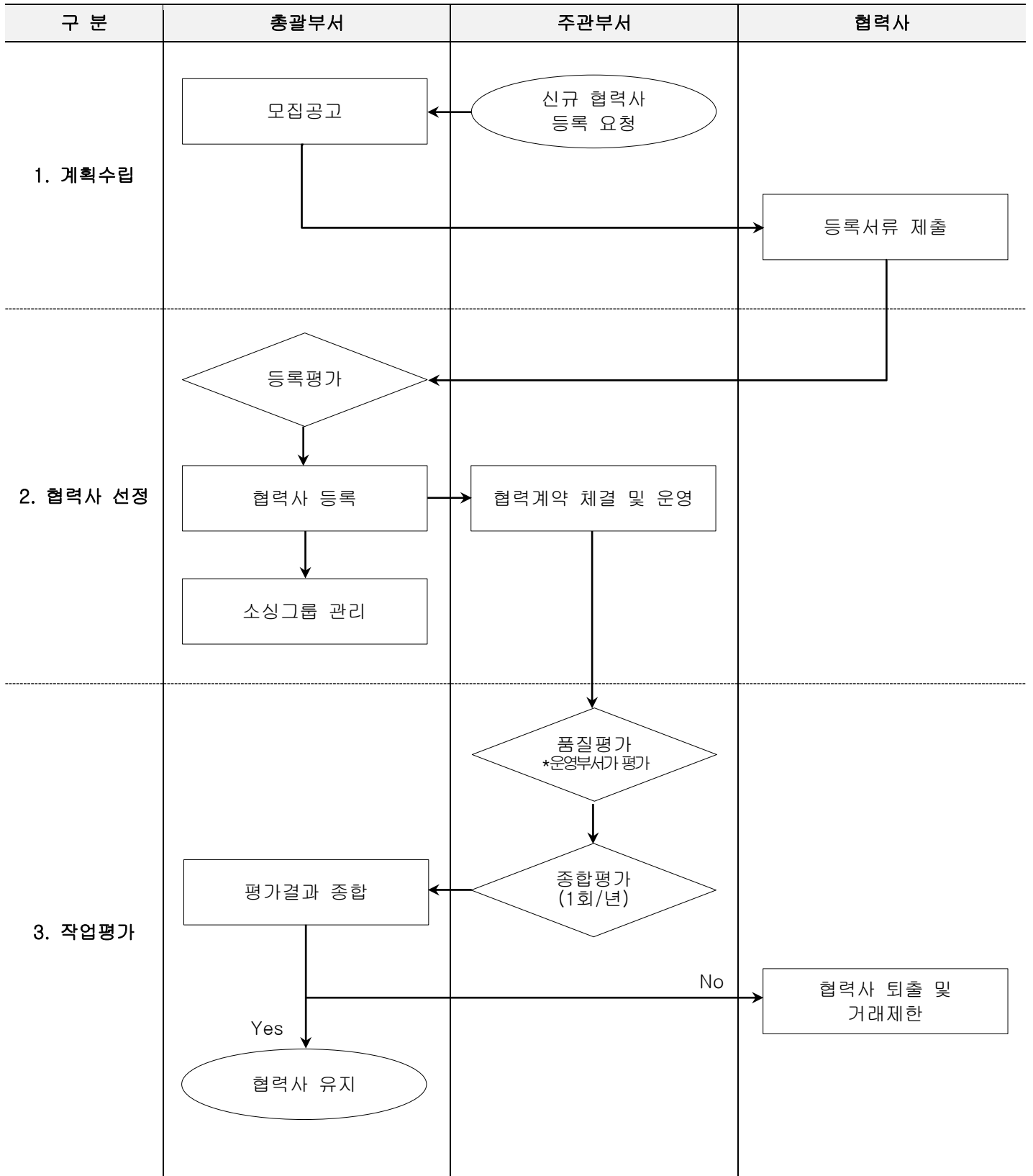
18. 이 지침은 2023년 8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19. 이 지침은 2024년 3월 1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붙임 #1. 소싱그룹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용역	시설관리	빌딩 시설 유지·보수, 플랜트 시설 유지·보수, 플랜트 시운전 등
	보안관리	경비, 주차, 안내 등
	미화관리	청소, 방역, 세탁 등
	환경관리	오폐수 관리, 폐기물 수거, 대기·수질 등 측정 등
	분양관리	분양대행, 분양광고대행, 분양행사대행 등
	입주관리	아파트, 오피스텔 등 하자관리, 사전점검 등
	코스관리	골프장 코스관리
	기타	전문자문(회계, 법률 등),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사	종합건설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전문건설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포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승강기 설치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
	정보통신공사업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
	전기공사업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
	건축설계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물 설계
	기타	기타 공사
자재	설비자재	건물/시설관리자재, 기계·전기 설비자재, 유동사, 화학약품, 유류 등
	공사자재	공사자재, 안전용품 등
	체육용품	골프채, 골프공 등
	식자재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기타	기타 자재, 상품

협력사 등록 및 운영 프로세스



협력사 등록 신청서

[목 차]

1. 등 록 원

2. 등록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보유면허증 사본
- 신용평가보고서 (이크레더블 또는 나이스디앤비)
- 실적증명서 (해당기업 발급)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공사) 산업재해율확인서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必

협력사 등록원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귀사의 협력사에 등록하고자 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포스코와이드 귀증

협력사 등록평가기준

구 분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내용)
경영기반 평가	신용등급	신용등급 A인 경우	20	
		신용등급 B인 경우	16	
		신용등급 C이하인 경우(유보 포함)	12	
	부채비율	부채비율 50%미만	10	
		부채비율 50%이상 150%미만	8	
		부채비율 150%이상	6	
	현금흐름	현금흐름 A인 경우	10	
		현금흐름 B인 경우	8	
		현금흐름 C이하인 경우(유보 포함)	6	
사업 수행능력	이행실적	유사작업 이행실적 및 납품실적 연평균 실적 7억이상	30	
		유사작업 이행실적 및 납품실적 연평균 실적 5억이상	26	
		유사작업 이행실적 및 납품실적 연평균 실적 3억이상	22	
		유사작업 이행실적 및 납품실적 연평균 실적 1억이상	18	
사업안정성	해당사업 영위기간	5개년도 이상 이행실적 제출	20	
		3개년도 이상 이행실적 제출	16	
		1개년도 이상 이행실적 제출	12	
ESG경영	환경	환경 관련 인증보유/교육수료/협약체결 1건 이상	2	
	안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50%미만	6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75%미만	4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미만	2	
경영투명성	부정당 제재처분 처분이력 없음	2		
가점	인권 경영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교육 참여(수료증 첨부 必 건당 2점)	최대+4점	
	그룹사 정책참여	포스코그룹 주관 사회공헌활동 및 동반성장활동 참여 등 (건당 2점)	최대+6점	
합 계			100	

*환경 관련 인증 인정범위 : 신용평가보고서 기재

※ 기타사항

- 외부 공인신용평가기관 : 이크레더블 또는 나이스디앤비
*상기 신용평가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서는 불인정
- 실적평가 기준 :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해당 분야만의 실적확인 가능한 문서
- 세금체납(유예처분 제외) 및 신용평가를 받지 않거나 신용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등록불가
-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면허 및 등록증 보유 必(필요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름)
- 산업재해율 확인서 : 안전보건공단(<https://certi.kosha.or.kr>) 발급
※ 공사업체는 필수이며, 최근1년간 산업재해율 평균이상 등록불가
- 자재는 평가 제외(단, 신용평가서 등 기본 등록서류 필요)
- 공인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Risk등급이 6~7등급인 경우 등록불가(등급 인정 기준일 : 협력사 등록 결재 요청일)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의 사이버/집합 교육에 한하여 인정

거래대금 결제계좌 등록(변경) 신청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대기업/중소기업	대기업() / 중소기업() / 일반기업() * 해당사항에 'O' 표시		
결제계좌			
거래은행		통장거래 인감(서명)	(통장과 동일한 인감/서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1. 신청인은 (주)포스코와이드와 신청인간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입금계좌 등록을 신청한다.
2. (주)포스코와이드가 신청인에게 지급할 거래대금을 위 입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그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주)포스코와이드는 위 입금계좌 또는 위 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거래은행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4. 신청인이 위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포스코와이드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신청서를 (주)포스코와이드가 접수한 후 입금계좌의 변경등록 절차를 완료(승인)함으로써 입금계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 입금계좌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위 입금계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주)포스코와이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5. 신청인이 입금계좌 등록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등록된 입금계좌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등록된 입금계좌가 정상적인 대금결제에 적당하지 않은 계좌인 경우 또는 등록된 입금계좌가 적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포스코와이드는 거래 대금의 입금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포스코와이드는 거래 조건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거래 대금의 지급지연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등록된 입금계좌는 변경등록 절차에 따라 변경되거나 신청인 또는 (주)포스코와이드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입금계좌 등록의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1. 입금계좌통장 사본 (원본대조필)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 해당일 경우

주식회사 포스코와이드 대표이사 귀중

품질평가서

일반용역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내용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100%	90%	80%	60%	40%		
품질 관리 (30)	계약이행도	계약내용(과업지시서 등)과 불일치 발생건수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품질	용역수행에 대한 품질수준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용역수행방법	용역수행방법 효율성 및 인력/ 자재 투입의 적정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 관리 (40)	작업인력관리	근무복장, 근무태도, 근무자격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현장관리	작업현장 정리상태, 안전장비 비치상태, 폐기물 처리상태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지침관리	매뉴얼 보유 및 준수여부, 현장적합여부, 내용 실효성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기록관리	작업일지 작성, 작업결과 보고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고객우수평가/ 민원제기빈도	고객 우수평가 및 민원제기건수	10	우수 2건	우수 1건	없음	민원 1건	민원 2건		
안전 관리 (30)	안전예방활동	법적의무사항준수, TBM활동 니어미스 활동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안전보호구착 용	안전화, 안전모, 기타 안전장구류 착용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안전사고빈도 (보안사고포함)	산업재해 및 안전보고서 건수	10	없음 - 산업재해의 경우 발생 시 0점 부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작업개선, 원가절감 기여, 수주 기여, 업무협력 수준, 안전신문고 제보 등(+1 ~ +10)								
	감점사항	재해/사고 은폐 및 미보고, 서류 위조, 악의성 투서 등(-30) 중대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 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품질평가서

공사(보수)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내용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100%	90%	80%	60%	40%				
공정 관리 (40)	공기관리	공기 준수여부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현장감독관리	현장책임자 배치여부 및 작업관리 수준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공정관리	공정계획표 등 공정 관련서류 작성 및 보고, 기성 보고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자재(장비)관리	공사자재 품질수준 및 관리상태, 자재관리대장 유무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환경관리	작업현장 정리상태, 폐기물 처리 상태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품질 관리 (30)	도면/시방서 준수	도면/시방서 내용과 작업결과 불일치 발생건수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하자발생 빈도	하자 발생건수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기술/품질관리	품질관리계획 등 작성/적정/준수 여부, 전문기술/인력/장비 조달 수준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고객우수평가/ 민원제기빈도	고객 우수평가 및 민원제기건수	5	우수 2건	우수 1건	없음	민원 1건	민원 2건				
안전 관리 (30)	안전예방활동	법적의무사항준수, TBM활동 니어미스 활동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안전보호구착용	안전화, 안전모, 기타 안전장구류 착용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안전사고빈도	산업재해 및 안전보고서 건수	10	없음	-							
			산업재해의 경우 발생 시 0점 부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작업개선, 원가절감 기여, 수주 기여, 업무협력 수준, 안전신문고 제보 등(+1 ~ +10)										
	감점사항	재해/사고 은폐 및 미보고, 서류 위조, 악의성 투서 등(-30) 중대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품질평가서

자재/상품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내용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100%	90%	80%	60%	40%		
품질 관리 (70)	계약이행도	계약내용(구매요청서 등)과 불일치 발생건수	2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납기준수	납기일 준수여부	2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부적합품 발생	부적합품 발생 비율	2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부적합품 처리 신속성	교체/반품 처리 시간	2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작업개선, 원가절감 기여, 수주 기여, 업무협력 수준, 안전신문고 제보 등(+1 ~ +10)								
	감점사항	재해/사고 은폐 및 미보고, 서류 위조, 악의성 투서 등(-30) 중대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품질평가서

코스관리업체

1. 평가대상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계약명				평가일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세부내용	배점	가중치					평가 점수	비고 (평가근거 등)	
				100%	90%	80%	60%	40%			
품질 관리 (30)	계약이행도	계약내용(과업지시서 등)과 불일치 발생건수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Green 관리	잔디 색/밀도/균일성/평탄성/ 질감/경도/탄력성, 뿌리상태, 토양상태, 병해충/잡초 여부,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Teeing Ground 관리	볼 마크 수리상태, divot 관리, 스칼핑 여부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Fairway 관리	잔디 밀도/균일성/평탄성, 뿌리/ 토양상태, 병해충/잡초 여부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Rough/Apron/ Collar/Bunker 관리	시약, 시비, 관수, 전지, 병해충 방지, 흑서/흑한 대비상태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수목관리	작업현장 정리상태, 안전장비 비치상태, 폐기물 처리상태 등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 관리 (40)	자재/농약관리	장비 고장 및 수리 발생건수 (노후화에 따른 고장 제외)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인력관리	근무태도, 근무복장, 근무자격	5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작업기록관리	고객 우수평가 및 민원제기건수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고객우수평가/ 민원제기빈도	작업일지 작성, 작업결과 보고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안전 관리 (30)	안전예방활동	법적의무사항준수, TBM활동 니어미스 활동 등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안전보호구착용	안전화, 안전모, 기타 안전장구류 착용	10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미달		
가감 평가	가점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0점 부여	10	없음	-						
	감점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30점 처리(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계			100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평가등급기준 : S(95점 이상), A(90점 이상), B(80점 이상), C(70점 이상), D(69점 이하)

3. 평가결과 : _____

구분	소속	직위	성명	평가의견	서명
평가자					
승인자					
업체확인				상기와 같이 품질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주)포스코와이드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주)포스코와이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포스코와이드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현지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주)포스코와이드와 협력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7.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8.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9.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10.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2.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주)포스코와이드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주)포스코와이드의 시정 조치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포스코와이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주)포스코와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